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7가합33600(본소), 2018가합506839(반소)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반소피고)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윤광기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길

피고(반소원고) D
변론 종결 2019. 9. 4.
판결 선고 2019. 10.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6,917,889원, 피고 C은 131,507,336원, 피고(반소원고) D은 80,753,6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9.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5,888,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D에게 114,28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C은 2014. 4. 26. 05:28경 E 카렌스 I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00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우측에 있는 비상주차구역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에서는 피고 C의 여자친구인 F가, 뒷좌석에서는 피고 D이 동승하고 있었다.

2)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상주차구역에 진입하기에 앞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3) 그럼에도 피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카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피고 D은 하악 골절, 하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입어 2014. 5. 9.까지 I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4. 11. 19.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5) 피고 C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J과 K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동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2) J과 K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57939호로 원고 및 피고 C,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 C이 J과 K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한 다음 2016. 8. 17. '원고 및 피고 C, B는 공동하여 J에게 128,132,155원, K에게 123,132,1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3281호로 항소하였고, J과 K은 부대항소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며, 이에 항소심 법원은 2017.4. 18. '원고는 피고 C, B와 공동하여 J에게 136,982,946원, K에게 132,482,9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2017. 5.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라 2017. 4. 27. J과 K에게 합계 310,771,69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액 중 이 사건 제1심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306,473,618원 1)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다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참조).

2) 공동불법행위책임

가) 피고 B, 피고 C 및 G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의 운전자로서, G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J, K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D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피고B의 직원으로서 피고 C의 직장상사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을 인도받아 업무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C은 피고 B에 다니는 동안 피고 D으로부터 일을 배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여 다니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피고 D은 피고 C이 동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한 다음 차량을 피고 C의 집에 주차시켜 놓은 사실, 이후 피고 C이 그의 어머니 소유인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 D과 망인을 태우고 인천으로 이동하여 조개구이를 먹은 다음 다시 피고 C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 피고 C은 피고 D으로부터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대신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망인을, 뒷좌석에 피고 D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D은 피고 B, C과 함께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의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인 공동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J, K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구상권의 발생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J 및 K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 피고들을 공동면책 시켰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J과 K이 피고 D을 상대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J과 K이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부담부분 산정을 위한 손해액 범위

구상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전부이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증액된 부분을 출재하였다 하더라도 불복하지 아니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공동면책으로서의 효력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참조), 피고C이 J 및 K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당시 손해액에서 공제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중 제1심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306,473,6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구상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액은 합계 336,473,618원(= 30,000,000원 + 306,473,618원)이다.

2) 원고측 과실비율 및 피고들 부담비율

가) 원고측 과실비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담부분의 비율은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측의 과실 정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사고 장소인 비상주차구역은 긴급한 경우

대피행위로서만 추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인데, G은 다른 사유 없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위 장소에 후미등도 켜지 않은 채 2시간가량 이 사건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은 점, 피고 C은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의 상태가 염려되어 정차하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차량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다가 비상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사고 전날 피고 C, D의 행적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구조 및 가로등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원고측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어머니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피고 C이 깜박 졸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2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도 졸음운전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발생 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분담비율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분담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카렌스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얻는 운행이익의 정도, 피고들 사이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 사이의 분담비율은 피고 B 10%, 피고 C 60%, 피고 D 3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6,917,889원(= 336,473,618원 X 80%(피고측 과실) X 10%(분담비율),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은 131,507,336원(= 336,473,618원 X

80%(피고측 과실) X 60%(분담비율) - 30,000,000원(형사합의금), 피고 D은 80,753,668원(= 336,473,618원 X 80%(피고측 과실) X 30%(분담비율))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J과 K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날 이후인 2017. 4.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하악 골절, 하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입어 11%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물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69,284,270원, 치료비 23,112,720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114,286,990원(=69,284,270원 + 25,002,720원 + 2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G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화물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에게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 31.에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며,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52831 판결 참조),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로 하악 골절, 하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입어 2014. 5. 9.까지 I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4. 11. 19.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 및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늦어도 2014. 11. 19.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신의 손해와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된 2018. 1. 31. 이전에 이미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D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D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이삼윤, 판사 윤정운

1) 원금 251,264,310원(= 128,132,155원 + 123,132,155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7.까지의 이자 55,209,308원(= 251,264,310원X (845일/365일 X 0.05 + 253일/365일 X 0.15), 원 미만 버림} 합계 306,473,618원(= 251,264,310원 + 55,209,308원)이다.